

벤처기업의 부사장, CFO 사내이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 스톡옵션 취소 부적법, 행사 가능 및 보수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법인 - 바이오 벤처기업 vs 경영관리본부장, CFO, 부사장, 사내이사

(2) 주식매수선택권 주총결의 후 부여 계약체결

(3) 회사의 이사회 결의 - 회사카드 사용 및 접대비 지급규정 위반, 질서문란 등 이유로

부여한 스톡옵션 취소 결정

(4) 주총 - 사내이사 해임 결의

(5) 불복하는 소송 제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스톡옵션 취소의 위법성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접대비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당할 만한 상법상 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접대비 지급규정에 따른 사전보고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이를 결재승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회사 규율 및 질서문란, 도덕성 흠결은 다소 주관적·심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을 제 3 내지 9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2018. 3. 23. 임기가 만료되어 2016. 3. 23.자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 해임은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퇴임이라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부적법하다.

3. 이사 해임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나아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그런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결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모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지고 법원으로서도 증명되었다고 인정된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해임을 결의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도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위 나.항에서 살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임사유로 나열한 사유들은, 원고가 해임 당할 정도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535168 판결

스톡옵션, 회사소송, 기술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